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4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정호・신정훈

송옥주 · 서영교 · 박홍배

민형배 · 정태호 · 추미애
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,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함(안 제37조제2항 신설).

- 나.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(안 제43조의3제 2항 신설).
- 다.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의4 신설).
- 라.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,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(안 제43조의5 신설).
- 마.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(안 제49조).
- 바.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(안 제10 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은"을 "제1항 및 제2항은"으로 한다.

②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등 경제 여건 및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"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"를 "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"로, "자료(이하 "임금등 체불자료"라 한다)를"을 "자료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"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"를 "자료제공의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

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또는 제2항에"로, "판단과"를 "판단 또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- 1.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(이하 "임금등 체불자료"라 한다)의 제공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 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
- 2.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- 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
- 2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총 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

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4(상습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)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- 1.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
- 2.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임금등의 체불 기간 · 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
- 2.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
- 3.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
- 4. 사업주의 재산상태
- 제43조의5(자료제공의 요청)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1. 사업장의 명칭, 소재지, 업종,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시 근로자 수
 - 2. 보험료의 체납금액 및 체납기간

제49조 중 "3년간"을 "5년간"으로 한다.

제109조제2항 중 "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

수 없다."를 "체불임금 합계가 평균임금의 5분의1 미만이고,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39조"를 "제37조, 제39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고하 는 입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상습 체불임금등의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	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
이자) ① (생 략)	이자) ①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지
	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
	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
	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
	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
	<u>100분의 20의 범위에서 「은행</u>
	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
	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
	여건 및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
	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
	<u>한다.</u>
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・사	③ 제1항 및 제2항은
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	
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	
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	
지 아니한다.	
제43조의3(임금등 체불자료의 제	제43조의3(임금등 체불자료의 제
공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신	공) ①

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25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 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(이하 "임금등 체불자료"라 한다)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 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체불사업주의 사망 · 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 설>

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
불사업주에 대하여
자료를
자료제공의
<u>.</u>

1.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 불액 등에 관한 자료(이하 "임금등 체불자료"라 한다)의 제공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 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 업주의 신용도 · 신용거래능력 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| 낙찰자 결정 등과------

- 2.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기 준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 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인 자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, 지 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불사 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 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- 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 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하여 1회 이상 유죄가 확 정된 자
- 2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 일 이전 1년 이내의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----
-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 ------판단 또는 입찰에서의

아니 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.

<신 설>

<u>④</u> 제1항 및 제2항에

제43조의4(상습 체불임금등에 대한 지급청구)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 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- 1.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경우
- 2.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

<신 설>

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임금등의 체불 기간・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
- 2.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
- 3.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 급액
- 4. 사업주의 재산상태
- 제43조의5(자료제공의 요청) 고용 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 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1. 사업장의 명칭, 소재지, 업 종,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시 근로자 수
 - 2. 보험료의 체납금액 및 체납 기간

제49조(임금의 시효) 이 법에 따 제49조(임금의 시효) -----

른	임금치	H권은	3년건	<u></u> 형]사하지
아ા	니하면	시효료	로 소'	멸한	다.

제109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 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 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<u>피해자</u> 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<u>제39조</u>, 제41조, 제4 2조, 제48조, 제66조, 제74조 제7항·제9항, 제76조의3제2 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, 제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- 3. 4. (생략)
- ③ (생 략)

<u>5년간</u>
체불임
미만이고, 피해자에게 변제한
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
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
<u>할</u> 수 없다.
제11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
음)
②
,
1. (현행과 같음)
2 <u>제37조, 제39조</u>
3.•4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